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검사 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기계, 전기·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전기안전으로 한정함)
압력용기	기계, 전기·전자, 화공,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화공안전으로 한정함)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기계·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함)
종합안전검사	기계, 전기·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기계·전기·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함)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 및 지부의 공용 장비 또는 지부별 보유 장비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번호	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1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가. 크레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곤돌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1) 와이어로프테스터 2) 회전속도측정기 3) 로드셀(5톤 이상) 4) 분동(0.5톤 이상)

		<p>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p> <p>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p> <p>라.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p> <p>마. 연간 검사대수가 21,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5) 초음파두께측정기 6) 비파괴시험장비(UT, MT) 7) 트랜시트 8) 절연저항측정기 9) 클램프미터 10) 만능회로시험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레이저거리측정기 13) 수준기</p> <p>비고</p> <p>1. 1)부터 4)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 2. 5)부터 7)까지의 장비는 각 지부별로 보유 3. 8)부터 13)까지의 장비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p> <p>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p> <p>1) 초음파두께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3) 비파괴시험장비(UT, MT)</p> <p>※ 이동 출장검사 가능</p>
2	<p>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p> <p>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p> <p>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p>	<p>가. 회전속도측정기 나. 정지성능측정장치 다. 비파괴시험장비(UT, MT) 라. 소음측정기 마. 절연저항측정기 바. 클램프미터 사. 만능회로시험기 아. 접지저항측정기</p> <p>비고</p> <p>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 2. 라목의 장비는 지부별로 보유 3. 바목부터 아목까지의</p>

		<p>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p> <p>라.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p> <p>마.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장비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p>
3	압력용기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p> <p>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p> <p>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p> <p>라.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가. 수압시험기</p> <p>나. 기밀시험장비</p> <p>다. 비파괴시험장비(UT, MT)</p> <p>라. 표준압력계</p> <p>마. 안전밸브시험기구</p> <p>바. 산업용내시경</p> <p>사. 초음파두께측정기</p> <p>아. 접지저항측정기</p> <p>자. 산소농도측정기</p> <p>차. 가스농도측정기</p> <p>카. 표면온도계</p> <p>타. 가스누설탐지기</p> <p>파. 절연저항측정기</p> <p>하. 만능회로시험기</p> <p>비고</p> <p>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p> <p>2. 사목부터 하목까지의 장비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p>
4	국소배기장치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p>	<p>가. 스모크테스터</p> <p>나. 청음기 또는 청음봉</p> <p>다. 절연저항측정기</p> <p>라. 표면온도계 및 내부 온도측정기</p> <p>마. 열선 풍속계</p> <p>바. 회전속도측정기</p> <p>사. 만능회로시험기</p> <p>아. 접지저항측정기</p>

		<p>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p> <p>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p> <p>마.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자. 클램프미터</p> <p>비고: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장비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p>
5	<p>종합안전 검사기관</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li> <li>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li> <li>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li> </ol> <p>나.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p> <p>다.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 연간 검사대수가 72,3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800대 추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안전, 기계, 전기·전자 또는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3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li> <li>2) 산업안전, 기계, 전기·전자 또는 화공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li> </ol> <p>라. 국소배기장치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p>	<p>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p>

	<p>이상이어야 한다.</p> <p>1)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 위생관리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또는 검사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2)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위생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	-----------------------------------------------------------------------------------------------------------------------------------------------------------------------------------------------------------------------------------------------	--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안전관리, 안전진단,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